

「구미 도시관리계획(문화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
의견제시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24년말,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천오백만명 규모이며 유기동물 발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, 유기동물 관리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
- 구미시는 “반려동물 문화공원”을 조성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-관리·교육-재입양 등 동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(문화공원)을 신설하고자 함
- 이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치 :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-79 일원

나. 면적 : 16,995m²

다. 내용 :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 신설

라. 추진경위 :

- 2025. 11 ~ 12월 :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(11.13 ~ 12.05)
- 2025. 11월 : 시의회 의견청취

마. 향후 추진계획 :

- 2026. 1월 :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26. 2월 : 구미시 고시

바. 의견제시 기한 : 2025. 12. 31일 까지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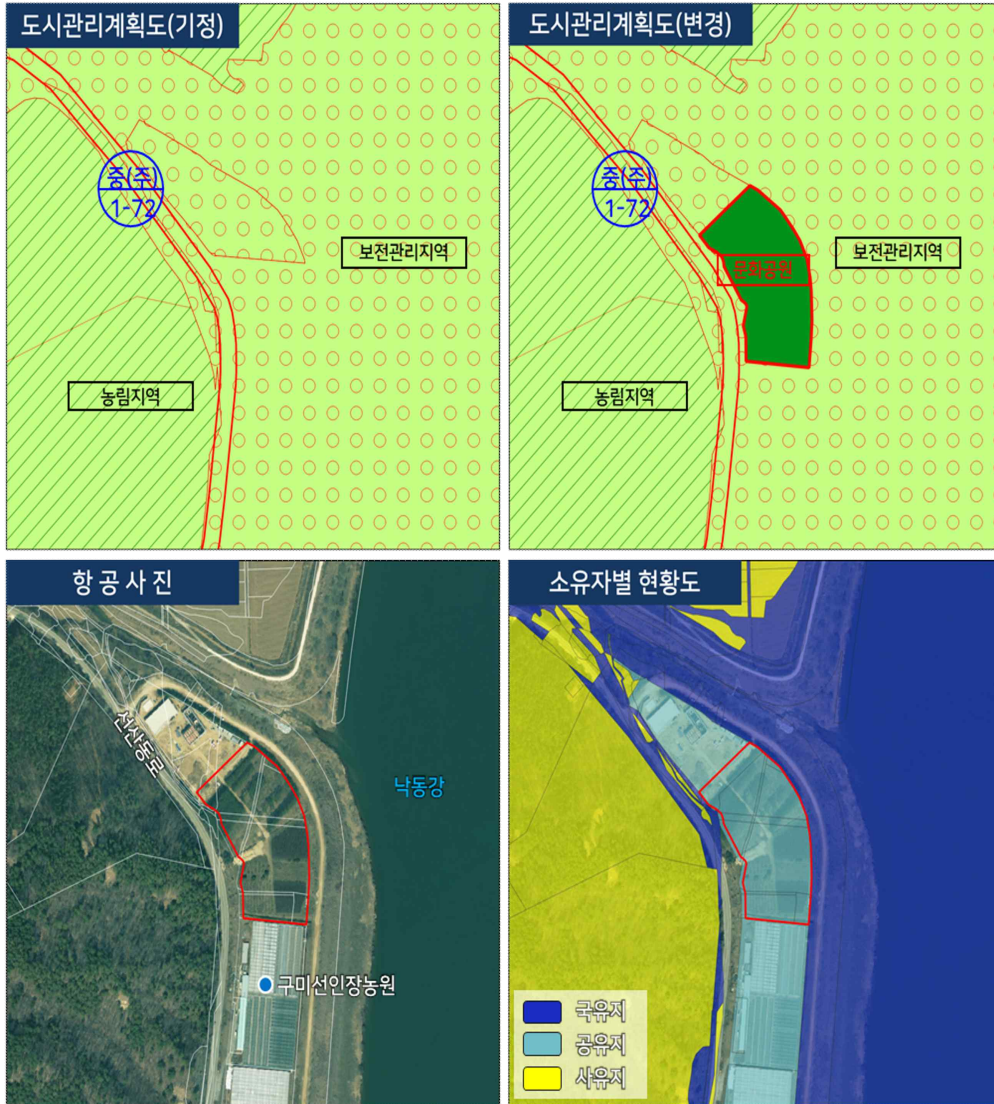
【공원 결정(변경) 조서】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A	반려동물 문화공원	문화공원	옥성면 구봉리 746-79	-	증)16,995	16,995	-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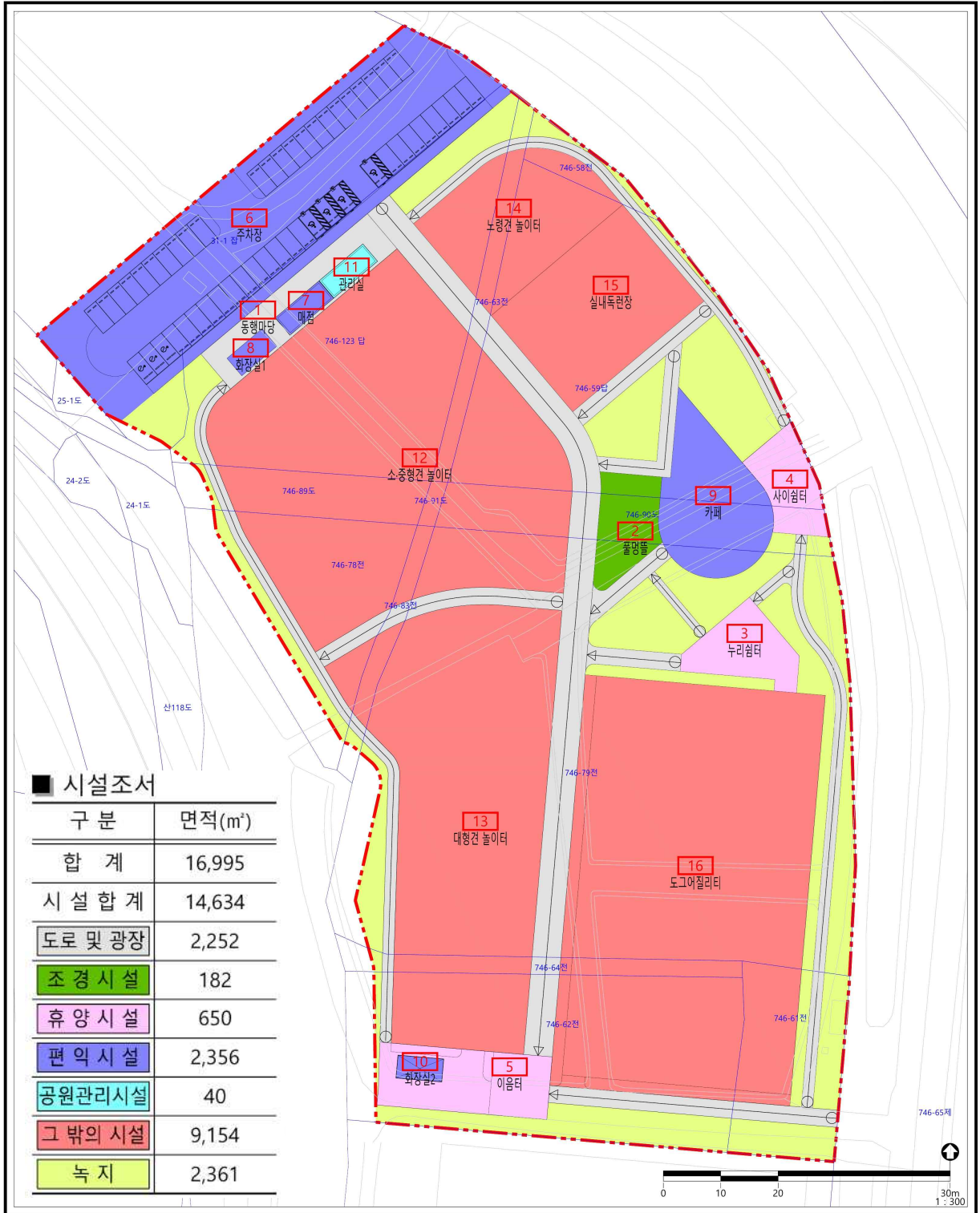
【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】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A	반려동물 문화공원	◦ 문화공원 신설 - A: 16,995m ²	◦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 신설

【 공원 A 】



【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 】



5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견은

-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-79 일원에 설치코자 하는 도시계획 시설(문화공원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요 내용으로는 비어있던 시유지에 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문화·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여가·휴식 기능뿐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원 및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관리, 안전사고 예방, 소음·악취 방지 등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지침 또는 관련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